

영등포구의회
제1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6. 10. 25.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民 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62호로 2016년 10월 1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평생교육법」 제21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지역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증대 및 주민의 보편적 학습권리 보장으로 평생학습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안 제14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제공

나. 평생학습센터에 학습매니저 배치 및 활동수당 지급

(안 제15조제3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평생교육법 제21조의2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맞게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된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 현행 조례에는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는 “평생학습관” 관련 내용만 규정하고 있으나, 2014.1.28.신설된 법 제21조의2¹⁾에 따라 읍·면·동에 설치할 수 있는 “평생학습센터” 관련 규정을 추가로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안 제4조) “평생학습센터”에는 학습매니저를 두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15조제3항)
- 현재 영등포구는 지역별로 특화된 6개소의 “평생학습센터”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명의 학습매니저가 활동 중으로 활동수당 및 프로그램운영비 9,250만원(국비 3,150, 구비 6,100)이 2016 세입·세출예산에 편성됨.
- 이와 같이 이미 추진 중에 있는 “평생학습센터”와 “학습매니저”의 운영 및 지원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보임.

1) 제21조의2(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기타, 잘못된 인용조문 삭제, 용어 수정, 조문위치 조정 등 미비된 부분을 정비 하였음.

구 분	현 행	개 정
제4조제1항 중	제5조 및 제6조	제6조
제8조 중	위원	위촉직 위원
제4장 성인문해교육	17조 앞에 위치	20조 앞에 위치

-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 문화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헌법」 및 「교육기본법」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 교육 진흥에 대한 책임을 부여 받고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

참 고 자 료

1 대한민국헌법

-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 교육기본법

-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평생교육법

-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영등포구 평생학습센터 (행복학습센터)

센터명	지역	위 치	학습공간 발굴 전략
공감센터	문래동	문래정보문화 도서관	일반지역주민에게 접근용이한 공공시설 유휴공간 으로, 평생학습기회 증대
공용센터	당산동	영등포구청 별관	일반지역주민에게 접근용이한 공공시설 유휴공간 으로, 평생학습기회 증대
공존센터	문래동	영등포노인종합 복지관	영세한 신규학습공간을 발굴하기보다 기존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높은 복지관 학습공간을 활용 하되 차후 지역사회 환원활동으로 연계 필요
공생센터	신길동	한국제과학교	기존 특정연령(베이비부머) 대상 교육장을 개방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학습공간으로 참여 , 평생학습기회 증대
공유센터	여의동	여의디지털도서관	일반지역주민에게 접근용이한 공공시설 유휴공간 발굴 하여 추후 학습동아리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유도
국제센터	대림동	원광디지털대학교 서울캠퍼스	중국동포 체감적 근거리 에 유휴 학습공간을 활용 하여 중국동포 초기 정착 시 생활교육 및 언어교육 등 한국적응 프로그램 참여 도모